

이 보도자료는 2020. 1. 9.(목)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강남수

전화 053-570-4390/ 팩스 053-570-4242

보도자료 2020. 1. 9.(목)

제 목 **대구 소재 놀이공원 안전사고 사건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(지청장 이용일)은 2019. 8. 16. 주식회사 △△△이 운영하는 대구 소재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 사고 사건을 수사하여,
 - ① 주식회사 △△△의 대표이사 A○○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로,
 - ② 주식회사 △△△ 소속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,
 - ③ 법인인 주식회사 △△△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,금일(1. 9.)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- 또한,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송치한 주식회사 △△△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금일(1. 9.) 혐의없음 처분하였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A○○(주식회사 △△△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)
- B○○(주식회사 △△△ 팀장)
- C○○(주식회사 △△△ 매니저)
- D○○(주식회사 △△△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)
- 주식회사 △△△

② 공소사실 요지

- A○○

- 본건 아르바이트생이 움직이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가 롤러코스터 바퀴 부분에 다리가 끼어 절단된 사고 관련하여,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, 안전교육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플랫폼 사이 통로 미설치, 플랫폼 쪽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[업무상과실치상, 산업안전보건법위반]

- B○○, C○○

-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·감독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안전교육, 수시 관리·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게 함 [업무상과실치상]

- D○○

- 피해자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작동시킨 업무상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게 함 [업무상과실치상]

- 주식회사 △△△

- 대표이사 A○○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[산업안전보건법위반]

2

수사경과

- 2019. 8. 16. 본건 안전사고 발생
- 2019. 9. 9. 대구성서경찰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송치
- 2019. 11. 19.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송치
- 2019. 11.~12. 피의자 및 관련 참고인 등 보완 수사
- 2019. 12. 18. 검찰시민위원회 안건 회부
- 2020. 1. 9. 기소 등 처분